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저소음 포장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8. 20. 경기도 수원시 ○○구 ○○로 ○○○○길 ○○-○○에 있는 ○○○○(주)(대표자 ○○○)와 1개사¹⁾와 ‘○○○○도로 개설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36,373,649,000원²⁾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8. 24. 착공하여 2017. 12. 24.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6절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경기도 ○○시 ○○○로 000, ○○○○○○○○ 000호(○○동)에 있는 (주)○○건설 (대표자 ○○○)

2) 2017. 5. 22. 총공사부기금액이 36,990,026,000원으로 변경되었음

한편 위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보안시설물(식당, 양어장)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위 공사의 측점 7+190에서 7+210까지 20m 구간과 7+340에서 7+380까지 40m 구간을 합한 총 60m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보안시설물이 없거나, 보안시설물이 폐쇄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반영되어 있는 저소음 포장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보안시설물이 없는 위 공사의 측점 3+925에서 4+146까지 221m 구간과 보안시설물인 양식장이 폐쇄된 위 공사의 측점 7+340에서 7+380까지 40m 구간을 합한 총 261m 구간에 반영되어 있는 저소음 포장 22,689m²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78,164,000원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보안시설물이 없거나, 보안시설물이 폐쇄된 구간에 반영되어 있는 저소음 포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78,164,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